



泰國特許法 9月12日 施行

—意匠도 同一法內에 包含—

商標法만을 1931년에 制定하여 施行하고 있는 泰國이 特許法을 制定하여 오는 9月 12일에 公布施行 하게 된다.

이번에 制定한 特許법에는 意匠權이 包含된다. 그러나 태국 特許법의 처음 草案되기는 1929年이며 그뒤 5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시행을 주저하여 왔다. 이번에 決斷을 내린 特許법의 骨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發明保護
- ② 意匠物品의 保護規範
- ③ 特許委員會의 任務및 權限
- ④ 內國人特許에 대한 보호
- ⑤ 罰則및 權利侵害에 대한 訴訟

이 法의 特徵은……

- ① 食品, 醫藥, 植物, 動物, 微生物을 利用한 發明(人間의 生存, 生命에 關聯되는 發明)과 王室의 尊嚴이나 公序良俗을 害치는 것에는 特許를 許與하지 않는다.
- ② 出願人資格은 相互主義(泰國人의 權利를 보호하는 나라의 사람에 대한 출원은 保障한다)를 採用하고 公務員의 發明은 國家에 歸屬한다.
- ③ 開發途上國에 有利한 完全審査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며 技術內容등을 情報로서 蓄積하게 한다.
- ④ 特許의 不使用(登錄後 3年以內)에 대한 裁定實施權制度가 設定되어 있는 것등을 들수가 있다. 권리의 存續期間은 特許가 公告日로부터 15年이고 의장은 7年이며 異議申請期間은 90日이다. 한편 特許委員會는 商務省次官이 委員長이 되며 商務長官이 任命하는 委員 12名으로 構成한다. 이 나라의 辯護士나 辨理士는 外國人이 많으므로 법이 시행되어도 審査要員의 不足과 더불어 特許制

度運用에 적지않는 難題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PCT料金 8月부터 30%引上

—通貨도 스위스프랑으로 單一化—

特許協力條約(PCT)事務局은 國際出願의 現行料金を 約 30% 引上하여 8月1일부터 適用한다. 또한 料金支拂通貨도 美弗과 스위스프랑의 2種에서 스위스프랑의 單一通貨로 統一한다.

이번에 改正된 PCT의 국제출원료금은 昨年 6月 1일부터 受理業務를 開始한 以來 첫 개정이며 지난 4月末부터 5月初까지 열린 PCT同盟總會의 決定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料率은

基本手數料가 250스위스프랑에서 325스위스프랑, 出願用紙는 30枚를 超過할때의 1枚當追加 手數料가 405프랑에서 6프랑,

指定手數料는 60프랑에서 78프랑,

取扱手數料는 75프랑에서 100프랑으로 각각 인상된 것이다.

출원료금에의 使用通貨를 스위스프랑으로 單一化한 理由는 換率變動이 적을뿐더러 파리協約의 採用通貨가 스위스프랑이라는 點을 勘案한 것이며 이 요율은 來年末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다.

和蘭, PCT批准書寄託

네덜란드政府는 지난 4月 10日 特許協力條約(PCT)批准書를 寄託하였다.

1970年 6月 9日 워싱턴에서 署名된 이 條約의 現加盟國은 이로써 22個國이 되었다. 各國間의 相異한 法節次로 말미아마 派生되는 特許出願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多國間條約으로 締結된 이 조약은 7월 10일부터 네덜란드에도 適用된다.

(WIPO提供)



루마니아, PCT批准書 寄託

루마니아政府는 4月 23日 特許協力條約(PCT)批准書를 寄託하였다.

PCT 第64條 5項에 따라 루마니아는 同條約 59條에 拘束되지 않는다고 宣言하였다.

共產國으로서는 蘇聯에 이어 2번째로 加入한 루마니아에 대하여 同條約은 7月 23일부터 發効한다. (WIPO 提供)

英國, 니스協定제네바條例批准書 寄託

英國政府는 國際標章登錄目的을 위한 商品 및 서비스分類協定批准書를 지난 3月 30日 寄託하였다.

니스協定이라고도 불리는 이 協定中 제네바條例를 비준한 英國에 대하여 이 협정은 7月 3일부터 發効되었다. 이로써 제네바條例批准國은 오스트레일리아, 베넌, 체코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이레, 스웨덴 및 영국등 모두 7個國이다. (WIPO 提供)

伊, IPC批准書 寄託

이탈리아 政府는 3月 28日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스트라스부르協定 第16條 5項에 따라 同協定批准書를 寄託하였다.

이 비준서에는 이탈리아는 同協定 第4條 4項ii)을 留保한다는 但書가 添附되었다.

이 協定은 이탈리아에 대하여 1980年 3月 30日 字로 發効하게 된다. (WIPO 提供)

蒙古, WIPO에 批准書 寄託

蒙古政府는 1978年 11月 28日 字로 世界知的的所有權機構(WIPO) 設立協約에 대한 加入批准書를 寄託하였다.

몽고는 WIPO協議會豫算에 대한 會員國負擔金支拂基準은 칼라스C에 準하도록 되었다.

이로써 WIPO協約은 몽고에 대하여 1979年 2월 28일자로 發効하였다. (WIPO 提供)

ASEAN發明·노우하우專門家會議

—WIPO後援으로 泰國서 開催—

東南亞國家聯合(ASEAN)諸國의 發明의 法的保護 및 技術革新과 노우하우에 관한 專門家會議가 지난 2月 1日에서 [5日까지 世界知的的所有權機構(WIPO)와 泰國商務省 및 國立研究委員會의 共同主催로 泰國의 파타야에서 열렸다.

이 會議에는 ASEAN 5個國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泰國의 專門家들이 參席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昨年度 1次會議結果報告를 檢討하는 한편 ASEAN域內 各國의 發明保護에 대한 對策과 이의 法制度를 要約討議하였다.

專門家團은 發明保護에 관한 法制의 要約이 매우 有用했다고 結論짓고 特許分野에 있어 ASEAN諸國의 發展維持와 經驗의 交換方法을 講究키로 合議하였다.

專門家團은 ASEAN諸國의 特許法單一化案은 말레이시아 와싱가포르가 英國法制를 따르고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現在 立法을 考慮中에 있으므로 이를 實現하기에는 아직 時期尙早라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ASEAN諸國間의 보다 緊密한 協力關係의 유지 특히 特許文獻 및 情報交流에 힘을 기울이는 問題를 討議하였다.

위에서 言及한 協力問題들 가운데는 特許廳間의 特許文獻의 交換, 特許登錄 또는 出願에 따른 書誌的資料의 發刊등이 포함되어 있다. 專門家團은 또한 ASEAN諸國間의 協力方案의 하나로 먼저 特許文獻情報分野에 있어 협력을 摸索하기 위해 一國의 特許廳이 要請에 따라 他國特許廳은 특허문헌이



나 정보를 提供하는 일부부터 着手할것에 合意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相互經驗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매우 有益한 機會가 되었다고 말하고 ASEAN 諸國間의 技術發明의 法的保護分野에 있어 最近의 動向을 把握하는데 더없는 좋은 機會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단은 情報交流를 위해 工業所有權問題들 다를 ASEAN-WIPO 專門家團의 設立을 建議하였다. 이 회의에는 ASEAN 5個國代表 以外에 WIPO에서 A.브그쉬 事務總長 外 G.레다키스 法律顧問, L. 카디드가마르 對外協力課長이 參席하였으며 유엔開發計劃(UNDP)에서 읍저버가 參席하였다. (WIPO 提供)

發明·노우하우모델法最終審議

—WIPO 實務班, 第8次會議서—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工業所有權開發協力常設計劃에 따른 開發途上國을 위한 發明및 노우하우 모델法 實務班은 지난 3月 5日에서 8日까지 제네바에서 8次會議를 열었다.

1974年 11月과 1975年 5月 11日에 열린 1次 會議에서 실무반은 開發途上國을 위한 發明및 노우하우 모델法 制定을 위해 國際事務局이 마련한 草案을 檢討하였다. 이 新모델法은 1965年 知的所有權保護

國際合同事務局(BIRPI)이 發行한 舊法과 代替될 豫定이다.

1976년 6월, 1976년 11~12월 그리고 1977년 6월 에 열린 4次, 5次 및 6次 會議에서 실무반은 第1, 2, 3 次 會議에서 내려진 結論에 비추어 국제사무국이 準備한 新모델法條項의 草案을 審議한바 있다. 한편 1978년 5월에 열린 7次 實務班會議에서는 新모델法의 最新草案에 대한 5, 6次 會議討議結果에 비추어 국제사무국이 마련한 一提案을 審議하였다.

실무반의 任務는 最新草案뿐만 아니라 常任委員 國政府 그리고 實務班會議에 招請된 機關들로부터 나온 論評에도 原則을 두고 新모델法을 制定하는 것이다.

時間關係로 실무반은 특허를 다룬 第1部단을 完全히 審의하였다

이같은 理由로 실무반은 노우하우에 관한 나머지 部分을 마무리짓기 위해 마지막 8次會議를 召集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 討議된 內容은 노우하우契約의 檢討및 登錄, 發明者證, 技術革新 및 特許技術移轉問題들을 다루었다.

1978년 9~10월의 WIPO 執行機構들의 9차회의에서 내려진 決定에 따라 모델法 第1部 特許에 관한 部分은 1979年中에 發行될 豫定이며 나머지 部分은 齎行에 앞서 WIPO 執行機構들에 의한 審議를 거친 다음 發行될 豫定이다. (WIPO 提供)

